

2022년 1월 1일 시행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고용보험 적용 특례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고용보험 적용)



근로복지공단  
전국민고용안전망강화추진TF팀



## Contents

### I. 노무제공플랫폼 고용보험 적용 특례

-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 확대

<1> **(정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노무제공자

- 정의, 적용대상

<2> **(신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피보험자 신고

<3> **(납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고용보험료 산정(부과) 및 원천공제(납부)

<4> **(지원)**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지원금

### II.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노무제공자, 사업주)

### III.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노무제공자)

### IV. 주요 Q & A

### V. 고용보험 업무수행기관 안내



## I. 노무제공플랫폼 고용보험 적용 특례

-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 확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적용 특례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적용확대  
(2022.1.1. 시행)



## <1> 정의

### 1\_1. 노무제공자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1\_2. 노무제공자

1\_3.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 노무제공플랫폼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이를 전자정보 형태로 기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고용법 제77조의7제1항)

### 1\_1.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

## 노무제공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

노무제공플랫폼 이용계약

퀵서비스업체



배달대행업체



대리운전업체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

### ❖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상 주요 의무

- ① 노무제공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신고  
(취득·상실 신고 및 월보수액 통보,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등)
- ②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및 납부
- ③ 고용노동부·공단의 플랫폼 이용 및 보험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제공
- ④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노무제공계약이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적용 특례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적용확대  
(2022.1.1. 시행)



## <1> 정의

### 1\_1. 노무제공자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1\_2. 노무제공자

1\_3.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1\_1.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특례  
-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

## 고용보험법 제77조의7(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 ①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이를 전자정보 형태로 기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하 “노무제공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에 대한 계약(이하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자에 대한 제15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을 취득**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적용 특례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적용확대  
(2022.1.1. 시행)



## <1> 정의

### 1\_1. 노무제공자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1\_2. 노무제공자

1\_3.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 1\_1.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특례

- 고용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 의무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4(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 ③ 제48조의3제4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 플랫폼사업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을 신고한 경우 그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부담분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원천공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 ④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한 경우에는 해당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게 그 원천공제 내역을 알려야 한다.



## <1> 정의

### 1\_1. 노무제공자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1\_2. 노무제공자

1\_3.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 1\_1.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특례

- 정보 제공 요청시  
제공 의무

### 고용보험법 제77조의7(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에 관한 보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 및 보험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노무제공플랫폼 이용계약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
  2.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의 보험관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사업장의 명칭·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노무제공자의 이름·직종·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⑤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해당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사이에 체결된 노무제공계약이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노무제공플랫폼에 보관하여야 한다.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4(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 ② **공단**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노무제공 횟수 및 그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 정의

- 1\_1. 노무제공자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 1\_2. 노무제공자
- 1\_3.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 1\_1.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특례

- 플랫폼사가  
노무제공자와 사업주  
에게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

### 고용보험법 제77조의7(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 ③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적용 특례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적용확대  
(2022.1.1. 시행)



## <1> 정의

1\_1. 노무제공자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 1\_2. 노무제공자

1\_3.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 1\_2. 노무제공자

###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221.1  
시행

- ① 퀵서비스기사
- ② 대리운전기사

217.1  
시행

- ①보험설계사, ②학습지 강사, ③교육교구 방문강사,
- ④택배기사, ⑤대출모집인, ⑥신용카드회원모집인
- ⑦방문판매원, ⑧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⑨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 ⑩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⑪건설기계조종사,
- ⑫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 <1> 정의

1\_1. 노무제공자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1\_2. 노무제공자

1\_3.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 1\_2. 노무제공자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플랫폼사) 배송 수단 관리 구분 필요

-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배송하는 노무제공자는 피보험자 신고하지 않음  
(원천공제도 하지 않음)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 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택배기사)과 **화물자동차로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
-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 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 <1> 정의

1\_1. 노무제공자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1\_2. 노무제공자

1\_3.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 1\_2. 노무제공자

#### 소득기준

✓ 소득합산 신청  
(22.1.1. 시행)

#### 연령기준

-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당연 적용(즉,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적용 제외)  
다만, 단기노무제공자(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노무제공자(월보수액 80만원 미만)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합산한 소득이 8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노무제공자가 소득 합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월보수액을 합산하여 80만원 이상인 기간은 당연 적용됨  
- 다만, 노무제공자 본인이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청하여야 함

- 65세 이후에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용 제외
- ❖ 적용확대 시행일인 22.1.1. 기준으로 65세 이상인 노무제공자는 적용 제외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당연 적용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적용 특례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적용확대  
(2022.1.1.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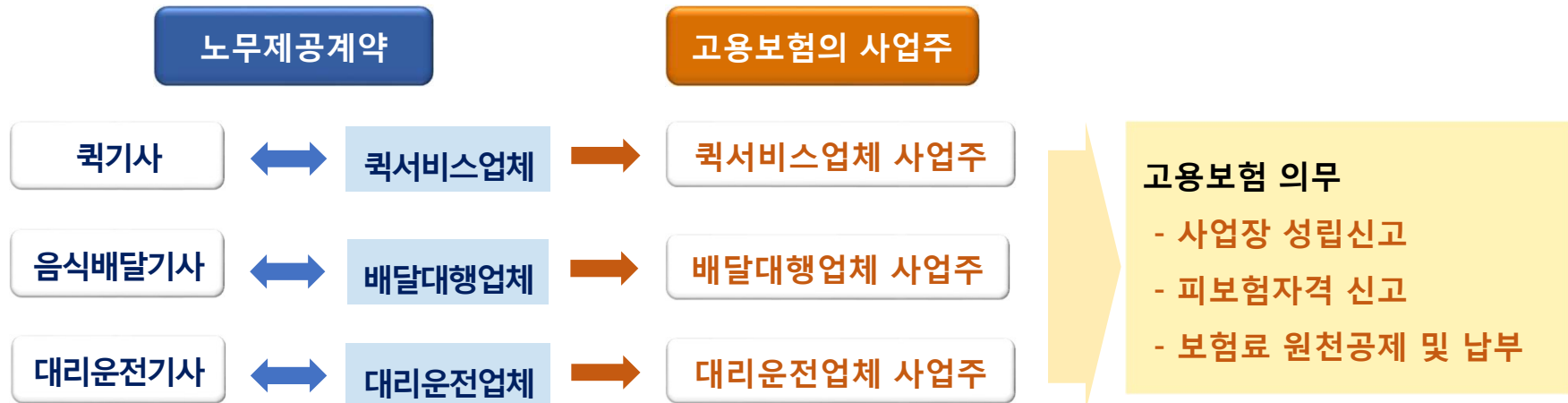


### <1> 정의

- 1\_1. 노무제공자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 1\_2. 노무제공자
- 1\_3.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 1\_3.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노무제공자와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



#### 고용보험 의무

- 사업장 성립신고
- 피보험자격 신고
- 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

## <신고의무자 사례>



### <유형1>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플랫폼사인 경우

#### 노무제공계약

##### 노무제공자

- 퀵기사
- 배달기사
- 대리운전기사



#####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 플랫폼사)

- 퀵서비스업체
- 배달대행업체
- 대리운전업체



#### 고용보험 신고·납부

#####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 퀵서비스업체
- 배달대행업체
- 대리운전업체

- ① 고용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지원사업)
  - 사업주 규모(피보험자인 근로자수 10명 미만), 노무제공자 소득(월보수액 230만원 미만) 등 지급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납부하는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 방식 지원**
- ② 플랫폼사 보험사무 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님에 유의

### <유형2> 노무제공플랫폼사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플랫폼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플랫폼사 특례 적용)

#### 노무제공계약

##### 노무제공자

- 퀵기사
- 배달기사
- 대리운전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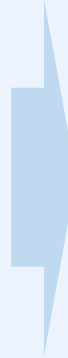
#####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 퀵서비스업체
- 배달대행업체
- 대리운전업체

#### 플랫폼 이용계약



##### 플랫폼사



#### 고용보험 신고·납부

##### 플랫폼사

- ① 고용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지원사업)
  - 사업주 규모(피보험자인 근로자수 10명 미만), 노무제공자 소득(월보수액 230만원 미만) 등 지급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사업주, 종사자가 직접 신청 공단이 사업주, 종사자에게 직접 지급**
- ② 플랫폼사 보험사무 지원금 지급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적용 특례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적용확대  
(2022.1.1. 시행)



## <2> 신고

### 2\_1. 플랫폼사 및 플랫폼 이용사업 신고

### 2\_2. 피보험자 신고

## 2\_1. 플랫폼사업 신고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신고

- (신고 기한) 사업 시작일의 다음달 15일까지  
- 22년 최초 신고는 1월 14일까지 신고 필요
- (신고 정보) 플랫폼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공단) 노무제공플랫폼사업 등록번호 부여

### (서식) 노무제공플랫폼사업 신고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고용보험 노무제공플랫폼사업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취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이 어긋은 내용은 신고인이 책임 집니다. (원복)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한: 5일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 상호·법인명 [ ] 전화번호 [ ] 소재지 [ ] 휴대전화 [ ] 우편물 수령지 [ ]
노무제공플랫폼사업	전자우편주소 [ ] 팩스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고용보험 사업종류 [ ]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사업장 수 [ ] 노무제공자 직종 [ ] 퀵서비스기사 [ ] 음식배달 [ ] 대리운전기사 [ ]
주된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 대규모기업 [ ] 해당 [ ] 비해당 [ ] 사업장명 [ ] 전화번호 [ ] 소재지 [ ]
고용보험 성립일	고용일종코드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의4제1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사업주) [ ]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원본	수수로 원본
발달직장 확인사찰	1. 사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표 초본[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함].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 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것 주어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저축용종)]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적용 특례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적용확대  
(2022.1.1. 시행)

## <2> 신고

### 2\_1. 플랫폼사 및 플랫폼 이용사업 신고

### 2\_2. 피보험자 신고



#### 2\_1. 플랫폼 이용사업

- 개시신고
- 종료신고

#### 플랫폼 이용사업 **개시신고서**

- **(신고 기한)** 플랫폼이용계약 체결일의 다음달 15일까지
  - 22년 최초 신고는 1월 14일까지 신고 필요
  - 이후 신규 이용사업장을 매월15일까지 신고
- **(신고 정보)** 사업장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주명, 사업주 주민등록번호, 플랫폼 이용 개시일 등

⇒ 퀵서비스업체, 음식배달업체, 대리운전업체

(공단)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별  
플랫폼 이용사업 개시번호 부여

#### 플랫폼 이용사업 **종료신고서**

- **(신고 기한)** 플랫폼이용계약 종료일의 다음달 15일까지
  - 이용사업 종료사업장을 매월15일까지 신고
- **(신고 정보)** 이용사업 개시번호, 플랫폼 이용 종료일 등

(공단)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별  
플랫폼 이용사업 종료처리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적용 특례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적용확대  
 (2022.1.1. 시행)

## 플랫폼사 신고 서식별 전자신고용 레이아웃

(서식)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사업 종료신고서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사업 종료신고 레이아웃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고공·상차보험 보험서비스 (total.comnet.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사업 종료신고서**

본 양식의 총괄사항과 작성방법을 참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 쓴 해당번호 곳에 "X" 표시 합니다. (선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대표자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장명	전화번호		

연번	신고사항	
1	이용개시번호	
	사업장명	
	사업종료일	
2	이용개시번호	
	사업장명	
	사업종료일	
3	이용개시번호	
	사업장명	
	사업종료일	
4	이용개시번호	
	사업장명	
	사업종료일	
5	이용개시번호	
	사업장명	
	사업종료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노무제공플랫폼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플랫폼사 이용사업 종료신고\_전자신고용 레이아웃

구분	신고내역 구분	플랫폼사 정보	이용사업 개시사업장 정보		
	1. 보험구분	2. 플랫폼 등록번호	3. 이용개시번호	6*.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장명	11*.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종료일
자료형태	char	char	char	char	char
길이(byte)	1	11	11	30	8
샘플	3	92100000001	11122333333	00퀵1	20220530
	3	92100000001	22233444444	00퀵2	20220605

## <2> 신고

2\_1. 플랫폼사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신고

2\_2. 피보험자 신고



### 2\_2. 피보험자 신고

- 피보험자 관리  
(일반/단기)

#### 일반 노무제공자

- (정의) 노무제공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사업주(퀵, 배달대행, 대리 업체)가 기사를 **모집하여 계약하고 사업주가 이용하는 플랫폼(프로그램)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계약 종료일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무기 계약으로 판단)
- (서식) <1>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2>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3>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통보서
- (신고 기한)
  - <1> 취득, <2> 상실: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 <3> 월보수액 통보서: 노무제공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신고 정보) (공통) 플랫폼등록번호, 이용사업 개시번호,  
 노무제공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1> 취득: **취득일, 취득월의 월보수액**, 직종, (외국인) 체류자격과 국적 등
  - <2> 상실: **상실일, 상실사유**, 이직월의 월보수액 등
  - <3> 월보수액: 노무제공월의 **월보수액** 등

#### 단기 노무제공자

- (정의) 노무제공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① 사업주(퀵, 배달대행, 대리 업체)와 노무제공자간 계약기간이 **명시적으로 1개월 미만인 사람**
  - ② 배송/대리 호출건을 발생시킨 발주사(퀵, 배달대행, 대리 업체)가 플랫폼을 통해 다른 사업주와 계약한 노무제공자에게 의뢰하는 경우 해당 **배송/대리 호출(공유콜)을 수행하는 사람**

(사업주와의 계약 없이 노무제공자가 앱상 호출건을 수락  
→ 호출건별 계약체결로 보아 단기노무제공자로 적용)
- (서식) 노무제공자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 (신고 기한) 노무제공월의 **다음달 15일까지**
- (신고 정보) 플랫폼등록번호, 이용사업 개시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종, 노무제공일자, 월보수액, (외국인) 체류자격과 국적** 등  
 (상실사유코드 신설) **"4 플랫폼을 이용한 노무제공종료에 따른 이직"**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적용 특례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적용확대  
(2022.1.1. 시행)



## <2> 신고

2\_1. 플랫폼사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신고

2\_2. 피보험자 신고

### 2\_2. 피보험자 신고

- 피보험자 관리  
(일반)

#### 일반 노무제공자\_취득 신고

- (서식) <1>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 (신고 기한) 취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 (취득일) ① 최초 노무제공 개시일 또는  
② 월보수액 80만원 이상인 달의 초일(매월 1일)
- '①' 최초 노무제공 개시월의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 '②'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으로 제외되다가  
소득변동으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 (신고 정보) 플랫폼등록번호, 이용사업 개시번호, 이름, 주민  
등록번호, 직종, 취득일, 취득월의 월보수액, (외국인) 체류  
자격과 국적 등

#### 취득일 결정 사례

➢ (사례1) 배달대행기사의 노무제공계약 개시일이  
22.1.15. 이고, 1월 기사 총수입이 300만원인 경우

→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므로 취득일은 22.1.15.

♣ 월보수액 = 총수입 - (총수입 X 직종별 경비율)  
\* 경비율 30.4%로 가정

$$= 300\text{만원} - (300\text{만원} \times 30.4\%)$$

$$= 300\text{만원} - 91,200\text{원} = 208,800\text{원}$$

➢ (사례2) 노무제공계약 개시일이 22.1.15.이고 1월의 월  
보수액이 75만원인 경우 → 1월 적용 제외

- 2월의 월보수액이 150만원인 경우 → 취득일은 22.2.1.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적용 특례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적용확대  
(2022.1.1. 시행)

## <2> 신고

2\_1. 플랫폼사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신고

2\_2. 피보험자 신고



### 2\_2. 피보험자 신고

- 피보험자 관리  
(일반)

#### 일반 노무제공자\_상실 신고

- (서식)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 (신고 기한)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 (상실일) ① 노무제공계약 종료일의 다음날 또는  
② 월보수액 80만원 미만인 달의 초일(매월 1일)
    - '①' 노무제공 종료월의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 '②' 취득 중이었으나,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 (신고 정보) 플랫폼등록번호, 이용사업 개시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종, 상실일, 상실사유, 이직월의 월보수액 등
- \* (이직월) 노무제공계약이 종료된 달  
(상실사유) 상실사유 코드 신설  
"45. 플랫폼을 이용한 노무제공 종료에 따른 이직"

#### 상실일 결정 사례

- (사례1) 배달대행기사의 노무제공계약 종료일이 22.7.15. 이고 7월 기사의 월보수액이 200만원인 경우  
→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므로 상실일은 22.7.16.
- (사례2) 노무계약 기간이 22.1.5.~22.7.15.이고 당연취득되어 22.1.5.부터 취득되었으나, 5월 기사의 월보수액이 75만원인 경우  
→ 상실일은 22.5.1.  
(즉, 피보험자격은 22.1.5.~22.4.30. 기간 유지됨)
- (사례3) 노무제공계약 종료일이 22.7.15.이고 7월 기사의 월보수액이 75만원인 경우  
→ 상실일은 22.7.1.

## <2> 신고

2\_1. 플랫폼사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신고

2\_2. 피보험자 신고



### 2\_2. 피보험자 신고

- 피보험자 관리  
(일반)

#### 일반 노무제공자\_월보수액 통보

- (서식)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통보서
- (신고 기한) 노무제공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신고 정보) 플랫폼등록번호, 이용사업 개시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취득일, 노무제공월의 월보수액 등**
- 월보수액 통보서를 제출하는 경우,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공단에서 직권 취득, 상실 처리함

→ 다만, 전산시스템 개선 일정에 따라 22. 4월 이후 가능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적용 특례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적용확대  
 (2022.1.1. 시행)

## 플랫폼사의 노무제공자 피보험자 신고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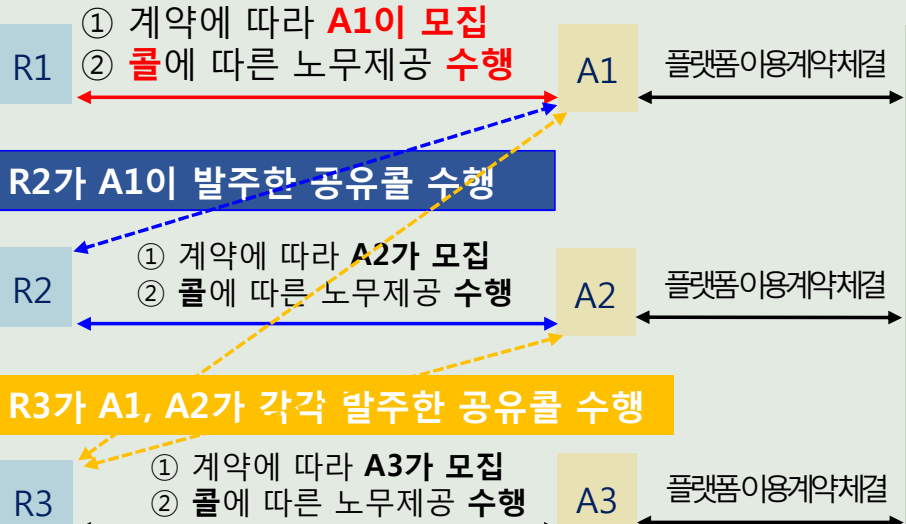
플랫폼내 노무제공 내역(22년 1월 가정)

기사

사업주

플랫폼사

(퀵서비스업체, 배달대행업체, 대리운전업체)



플랫폼사  
신고

이용사업  
개시신고

피보험자 신고

P1  
플랫폼  
등록번호  
부여

A1  
개시번호  
부여

A2  
개시번호  
부여

A3  
개시번호  
부여

일반 노무제공자  
(취득월보수액신고)

A1  
개시  
번호 R1

A2  
개시  
번호 R2

A3  
개시  
번호 R3

단기 노무제공자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

A1  
개시  
번호 R2 R3

A2  
개시  
번호 R3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적용 특례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적용확대  
 (2022.1.1. 시행)

## 플랫폼사 신고 서식별 전자신고용 레이아웃

(서식)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일반노무제공자> 취득신고 레이아웃



플랫폼사 노무제공자 취득신고 전자신고용 레이아웃

구분	보험구분 (0:전체/1:산재/3:고용)	플랫폼사 정보	이용사업장 정보	노무제공자 정보		고용보험				
		플랫폼사 등록번호	이용사업장 개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월보수액	*취득일	*직종부호	국적	체류자격
자료형태	char	char	char	char	char	number	char	char	char	char
길이(byte)	1	11	11	13	30	12	8	4	6	6
샘플	3	92200000001	11122333334	8001011234567	김우주	2000000	20220105	957	char	char
	3	92200000001	11122333335	8002021234568	이한나	2500000	20220110	957	6	6

직종부호  
 957 퀵서비스기사  
 958 대리운전기사

당연적용만 가능  
 F2 영주, F5 거주  
 F6 결혼이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보험료의 부담방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첨 제2호제14차시) <개정> 고용·산재보험보험서비스(total.comnet.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 [ ]에슬인 )  
 [ ]산재보험 입직 신고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본 부호의 목차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십시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로 표시합니다. ) (일부)

업종번호	업종명	처리기간	5일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이용개시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우편번호( )										
보험사명	명칭	허수급인 관리번호(장부·공공발주사업의 본화에실용목적의 사업 등의 허수급인만 해당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종 부호	지역 취득일	국적	채류 자격	월(평균)보수액	입직일	유대전화	해당 직종자에 한하여 아래 표 - 참조하여 번호 기재
	1									발문연계용 입직유형 택배/운기사 비승수단 화물차주 건설기계 종류
2										발문연계용 입직유형 택배/운기사 비승수단 화물차주 건설기계 종류

· 직종별 특례기사 및 퀵서비스기사  
 비승수단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기계종류

「고용보험법」 제77조의3제1항·제77조의7제1항·제77조의10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6제1항·제104조의12제1항·104조의13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6조의3제1항제1호·제126조의4제1항제1호, 「산재보험법」 제12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취득·입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적용 특례  
 킷서비스·대리운전 기사 적용확대  
 (2022.1.1. 시행)

## 플랫폼사 신고 서식별 전자신고용 레이아웃

(서식)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통보서

<일반노무제공자> 월보수액 통보 레이아웃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개정>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월평균보수 통보서(   년   월)**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이용개시번호) 노무제공플랫폼의 경우만 작성한다			
	명칭(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장명)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우편번호(    )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명칭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자격 취득일	월평균보수(월보수액)
1				
2				
3				
4				
5				
6				
7				
8				
9				
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월평균보수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OO지역본부(지사)장 귀하

플랫폼사 월보수액 통보서\_전자신고용 레이아웃

구분	플랫폼사 정보	이용사업장 정보	노무제공자 정보			
	노무제공플랫폼사 등록번호	이용사업 개시번호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자격취득일	월보수액
자료형태	char	char	char	char	char	number
길이(byte)	11	11	30	13	8	12
샘플	92200000001	11122333334	김우주	8001011234567	20220105	2000000
	92200000001	11122333335	이한나	8002021234568	20220110	2500000

해당 월의 월보수액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적용 특례  
 워서비스·대리운전 기사 적용확대  
 (2022.1.1. 시행)

## 플랫폼사 신고 서식별 전자신고용 레이아웃

### (서식)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 <일반노무제공자> 상실 신고 레이아웃



플랫폼사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상실신고 전자신고용 레이아웃  
 상실일  
 노무제공 종료일의 다음 날

구분	보험구분 (0:전체/1:산재/3:고용)	플랫폼사 등록번호	이용사업 개시번호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전화(지역번호)	전화(국번)	전화(뒷번호)	고용보험상실연월일	고용보험상실사유 구분코드	고용보험구체적사유	고용보험월보 수액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전월보 수액 (노무제공자)
자료형태	char	char	char	char	char	char	char	char	char	char	char	number	number
길이(byte)	1	11	11	30	13	3	4	4	8	8	30	12	12
샘플	3	92200000001	11122333334	김주주	8001011234567	02	1111	1111	20220509	45	플랫폼이용 노무제공 종료	2000000	2000000
	3	92200000001	11122333335	이한나	8002021234568	052	2222	2222	20220510	45	플랫폼이용 노무제공 종료	2000000	2000000

상실코드(신설)  
 45. 플랫폼을 이용한 노무제공 종료에 따른 이직

월보수액  
 이직일(노무제공 종료일)이 포함되는 월의 월보수액 작성

전월 월보수액  
 이직일(노무제공 종료일)이 포함되는 월의 전월 월보수액 작성  
 (월보수액통보하지 않은 경우만 작성)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외16서식) <개정> 고용·산재보험포털서비스(total.com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 ] 예술인 )  
 노무제공자 )  
 산재보험 이직신고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하위의 유리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 온 채입하는 곳에 나옴 합니다. (일부)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사업장명칭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이용개시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팩스번호
우편번호( )			
보험사무번호	명칭	허수금인 관리번호(일부 공공일주사업의 문화예술용역계약 사업 등의 허수금인만 해당함)	
대행기관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상실일	상실사유	이직일	유대전화번호	고용보험		산재보험	
							월보수액	전년도	이직사유 [ V ]	회사번호 / 대리운전자사관 번호
1										
2										
3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 제77조의7제1항, 제77조의10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6제1항, 제104조의12제1항, 104조의13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8제1항제2호, 제125조의9제1항제2호, 「산재보험료징수법」 제125조의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의6제1항 위와 같이 기재사항 기입을 신고합니다.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OO지역본부(지사)장 귀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적용 특례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적용확대  
(2022.1.1. 시행)

## 플랫폼사 신고 서식별 전자신고용 레이아웃

(서식) 단기노무제공자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단기 노무제공자>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레이아웃



플랫폼사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전자신고용 레이아웃

구분	신고내역 구분	플랫폼사 정보	노무제공사업장 정보	노무제공자 정보															보험료 원천공제 정보
				1. 보험구분	2. 플랫폼 등록번호	3. 이용개시번호	11*. 성명	12*. 주민(외국인)등록번호	13*. 신고년월	14. 직종코드	15. 체류자격	16. 국적	17. 종사일수	18. 보수총액*	19. 이직사유코드*	특고 부담분*			
자료형태	char	char	char	char	char	char	char	char	char	char	char	char	char	char	char	char	number	char	number
길이(byte)	1	11	11	30	13	6	4	6	6	2	2	2	12	1			4	12	
샘플	3	92200000001	11122333334	홍00	7801015555561	202201	957			1		2	200000			4	1400		
	3	92200000001	92201000012	김00	7801015555562	202201	957					2	200000			4	1400		
	3	92200000001	92201000013	박00	7801015555563	202201	957					3	300000			4	2100		
	3	92200000001	92201000014	이00	7801015555564	202201	957					2	200000			4	1400		
3	92200000001	92201000015	정00	7801015555565	202201	957					2	200000			4	1400			

직종코드  
957 퀵서비스기사  
958 대리운전기사

당연적용만 가능  
F2 영주, F5 거주  
F6 결혼이민

상실코드(신설)  
4. 플랫폼을 이용한 노무제공 종료에 따른 이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외16서식) <7페이지>

**[ ]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 [ ] 단기 예술인 )**  
**[ ] 산재보험 입·이직신고서 (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년 월 일)

※ 본문의 목적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위하여, 생상이 어우름 한은 신고인이 일치 않습니다. (일괄)

접수번호: [ ] 처리기간: 7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명칭: [ ]  
 등록번호: [ ]  
 하수급인관리번호 또는 이용개시번호: [ ]

공통사업장: 유기사업명: [ ]  
 소재지: [ ]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 ]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 ]  
 전화번호: [ ] (유선) (휴대전화) 팩스번호: [ ]

성명: [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국적: [ ] 체류자격: [ ] 직종 부호: [ ]  
 건설기계번호: [ ]  
 휴대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노무제공일수 (\*0\* 표시)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6	7	8	9	10	6	7	8	9	10	6	7	8	9	10	6	7	8	9	10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31					31					31					31				

보수총액: [ ] 일 [ ] 일 [ ] 일 [ ] 일  
 이직사유 코드: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04조의6제2항·제 104조의12제2항·제 104조의14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26조의3제2항·제 126조의9제2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6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신고인(사용자·대표자): [ ]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 ]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OO지역본부(지사)장 귀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적용 특례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적용확대  
(2022.1.1. 시행)

## ♣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관리

- ♣\_1. (적용 제외) 65세 이상 노무제공자
- ♣\_2. 외국인 노무제공자
- ♣\_3. (적용 제외) 공무원 또는 사학연금적용자 중 겸업하는 노무제공자
- ♣\_4. 이중취득 허용



### (적용제외) 65세 이상 노무제공자

#### ○ '22.1.1.(시행일) 기준 65세이상이면 적용 제외

- 다만, 65세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자가 65세 이후에 계속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노무제공하는 경우에는 65세 이상이더라도 적용

### 사례별 판단(일반 노무제공자 기준)

- (사례1) 생년월일이 1957.11. 이전인 노무제공자가 퀵업체와 1개월 이상 계약하여 퀵기사로 일하는 경우  
→ 65세 이상자로 적용 제외
- (사례2) 생년월일이 1957.2.1.인 노무제공자가 2022.1.5.부터 퀵업체와 1개월 이상 계약하여 퀵기사로 일하는 경우  
→ 2022.1.5. 현재 64세이므로 당연 적용
- (사례3) 생년월일이 1957.1.1.인 노무제공자가 2022.1.5.부터 퀵업체와 1개월 이상 계약하여 퀵기사로 일하는 경우 단, 5년 전부터 계속하여 타사업장 근로자로 취득됨  
→ 65세 이상이더라도 당연 적용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적용 특례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적용확대  
(2022.1.1. 시행)

## ♣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관리

- ♣\_1. (적용 제외) 65세 이상 노무제공자
- ♣\_2. 외국인 노무제공자
- ♣\_3. (적용 제외) 공무원 또는 사학연금적용자 중 겸업하는 노무제공자
- ♣\_4. 이중취득 허용



### (외국인 노무제공자) 체류자격별 적용

- ① (당연적용) 영주(F-2), 거주(F-5), 결혼이민(F-6)
- ② 그 외 체류자격은 적용 제외

### 플랫폼사 피보험자 신고 관련 안내

- (플랫폼사) 외국인 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주민번호 13 자리 중 7번째 자리 숫자가 "5", "6"인 경우)
  - 사업주(퀵서비스·배달대행·대리운전 업체 등)가 노무제공자의 체류자격과 국적 정보를 입력하도록 안내
  - ⇒ 플랫폼 전산프로그램상 입력란 신설·관리 필요
- (공단) 신고된 외국인 노무제공자에 대해 유관기관 입수정보를 통해 당연적용 여부 검증 예정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적용 특례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적용확대  
(2022.1.1. 시행)

## ♣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관리

- ♣\_1. (적용 제외) 65세 이상 노무제공자
- ♣\_2. 외국인 노무제공자
- ♣\_3. (적용 제외) 공무원 또는 사학연금적용자 중 겸업하는 노무제공자
- ♣\_4. 이중취득 허용



### 공무원 또는 사학연금적용자 중 겸업하는 노무제공자

- **공무원 또는 사학연금적용을 받는 자가 퀵·대리 기사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 (적용 제외)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노무제공자로 겸업을 하더라도 적용 제외

### 플랫폼사 피보험자 신고 관련 안내

- (플랫폼사) 공무원 또는 사학연금적용자의 경우에는
  - 노무제공자가 공무원 또는 사학연금적용자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퀵서비스·배달대행·대리운전업체 등)가 **노무제공자의 자격 정보를 입력하도록 안내**
    - ⇒ **플랫폼 전산프로그램상 입력란 신설·관리 필요**
- (공단) 신고된 노무제공자에 대해 유관기관 입수 정보를 통해 당연적용 여부 검증 예정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적용 특례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적용확대  
(2022.1.1. 시행)

## ♣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관리

- ♣\_1. (적용 제외) 65세 이상 노무제공자
- ♣\_2. 외국인 노무제공자
- ♣\_3. (적용 제외) 공무원 또는 사학연금적용자 중 겸업하는 노무제공자
- ♣\_4. 이중 취득 허용



### 피보험자격을 이중 취득

- 근로자↔노무제공자, 노무제공자↔노무제공자, 노무제공자↔예술인 간 **이중 취득 모두 허용**
  - 다만, 근로자↔근로자 간 이중취득은 불가
  - 일반 노무제공자↔자영업자는 노무제공자를 당연 취득  
\* 가입 또는 유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중취득 가능
  - 단기 노무제공자↔자영업자는 선택 또는 원하는 경우 이중취득 가능
- **같은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근로자와 노무제공자로 이중 취득은 불가**

### 이중취득 예시

- (예시) 노무제공자 vs 예술인 vs '갑' 사업 근로자(월 평균보수 300만원) vs '을' 사업 근로자(월평균보수200만원)인 경우
  - 노무제공자, 예술인, '갑' 사업의 근로자로 이중 취득



### <3> 납부

#### 3\_1. 보험료 산정·부과

#### 3\_2. 보험료 원천공제·납부

#### <1>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 (정의)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 및 필요경비\***를 뺀 금액
- \* (필요경비) 직종별 경비율 고시 예정(12월말)
- 월보수액 산정식 = 총수입(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비과세 소득 - (총수입 X 직종별 경비율)

#### <2> 노무제공자의 보험료율 및 월별보험료 산정

- (보험료율) 1.4%
  - 실업급여사업만 적용(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미적용)
  - 22.7.1.부터는 1.6% 적용 예정
- (보험료의 부담) 노무제공자(0.7%)와 사업주(0.7%)가 각각 1/2씩 부담
  - 22.7.1.부터는 노무제공자(0.8%)와 사업주(0.8%) 각각 1/2씩 부담 예정
- 월별보험료 산정식 = 월보수액 X 0.7%(노무제공자 부담분)  
+ 월보수액 X 0.7%(사업주 부담분)



### <3> 납부

#### 3\_1. 보험료 산정·부과

#### 3\_2. 보험료 원천공제·납부

### <3> 하한 기준보수

- **(하한 기준보수, 133만원)** 일반노무제공자의 경우 월보수액이 13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33만원으로 보험료 산정·부과
  - 기준보수의 60%인 798,000원을 실제 구직급여 하한액으로 함
  - (예시) 월보수액이 100만원인 경우, 월별보험료는 월보수 133만원으로 보험료 산정. 월별보험료는 18,620원  
 $133\text{만원} \times 0.7\% + 133\text{만원} \times 0.7\% = 9,310\text{원} + 9,310\text{원} = 18,620\text{원}$
- 단기노무제공자는 하한 기준보수 미적용(실보수액으로 보험료 산정)

### <4> 보험료 상한액

- **(보험료 상한액)** 노무제공자의 보험료가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으로 부과
  - 전전년도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10배 이내로 고시
  - 월 441,150원(연간 5,293,800원)



### <3> 납부

#### 3\_1. 보험료 산정·부과

#### 3\_2. 보험료 원천공제·납부

#### 월보수액과 월별보험료 산정 예시

- (사례1) 일반노무제공자인 음식배달기사의 노무제공계약 개시일이 22.1.15. 이고, 1월 총수입이 300만원인 경우 (경비율 30.4%로 가정)

→ 월보수액은 2,088,000원

$$\begin{aligned} \text{월보수액 산정식} &= 300\text{만원} - (300\text{만원} \times 30.4\%) \\ &= 300\text{만원} - 912,000\text{원} = 2,088,000\text{원} \end{aligned}$$

\* 경비와 보수 산정 시 원단위 미만 절사임에 유의

→ 월별보험료는 29,220원

$$\begin{aligned} \text{월별보험료 산정식} &= 2,088,000\text{원} \times 0.7\% + 2,088,000\text{원} \times 0.7\% \\ &= 14,616\text{원} + 14,616\text{원} = 14,610\text{원} + 14,610\text{원} = 29,220\text{원} \end{aligned}$$

\* 보험료 산정 시 원단위 절사임에 유의

#### 월보수액 산정과 하한 기준보수 적용 예시

- (사례1) 일반노무제공자인 대리운전기사의 노무제공계약 개시일이 22.1.15. 이고, 1월 총수입이 150만원인 경우(경비율 21.4%로 가정)

→ 월보수액은 1,179,000원이나, 하한 기준보수 적용

$$\begin{aligned} \text{월보수액 산정식} &= 150\text{만원} - (150\text{만원} \times 21.4\%) \\ &= 150\text{만원} - 321,000\text{원} = 1,179,000\text{원} \end{aligned}$$

→ 월별보험료는 18,620원

$$\begin{aligned} \text{월별보험료 산정식} &= 133\text{만원} \times 0.7\% + 133\text{만원} \times 0.7\% \\ &= 9,310\text{원} + 9,310\text{원} = 18,620\text{원} \end{aligned}$$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적용 특례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적용확대  
(2022.1.1. 시행)

### <3> 납부

3\_1. 보험료 산정·부과

3\_2. 보험료 원천공제·납부



#### 일반 노무제공자

❖ 월단위 원천공제 필요

❖ **(주의)** 월보수액이 하한 기준보수(133만원) 보다 작은 경우에는 133만원으로 산정한 월별보험료 부담분을 원천공제하여야 함.

- 즉,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 133만원 미만인 경우

기사 부담 보험료는 9,310원, 사업주 부담 보험료도 9,310원으로 각각 해당 금액을 원천공제  
공단은 18,620원으로 보험료 부과하고 플랫폼사는 18,620원을 납부하여야 함에 유의

#### 단기 노무제공자

❖ 단계적 원천공제 필요

<1단계> 일단위 보수액에 대한 보험료 부담분 산정후 원천공제(일정산)

<2단계> 월단위 보수액에 대한 보험료 부담분 각각 산정 후 원천공제(월정산)

❖ 하한기준보수를 적용하지 않고, 실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부과

## <플랫폼사의 보험료 원천공제 및 보험료 산정 예시>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적용 특례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적용확대  
(2022.1.1. 시행)

### <1> 일반 노무제공자(노무제공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배달대행업체	기사	일자	콜순번	기사 수입	경비 (30.4% 가정)	① 보수액	기사 부담 보험료 (0.7%)	사업주 부담 보험료	월별보험료 총액
A1	R1	1	1	3,000					
			2	2,500					
			3	2,150					
			소계	<b>7,650</b>					
		2	:	:					
		:	:	:					
		31	:	:					
		월계			<b>3,139,460</b>	954,395.84 = <b>954,395</b>	① <b>2,185,065</b>	15,295.455 = <b>15,290원</b>	<b>15,290원</b>

(경비, 보수의 단수조정)  
원단위 미만 절사

(보험료의 단수조정)  
원단위 절사

- (월보수액 통보) "①"에 해당하는 월보수액을 이용개시 사업주별, 노무제공자별 레이아웃에 따라 월보수액을 공단에 통보
- (원천공제 및 보험료 납부) A1(사업주) 부담분으로 15,290원, R1(기사) 부담분으로 15,290원을 공제하여 공단이 부과하는 30,580원 납부
- (하한 기준보수 적용) "①"에 해당하는 월보수액이 80만원이상 13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보수 133만원으로 보험료 산정  
월별보험료는 18,620원이며, 기사 부담액은 9,310원, 사업주 부담액은 9,310원으로 원천공제하고, 공단이 부과하는 18,620원 납부

## <플랫폼사의 보험료 원천공제 및 보험료 산정 예시>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적용 특례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적용확대  
(2022.1.1. 시행)

### <2> 단기 노무제공자(노무제공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공유콜을 수행하는 사람)

배달대행업체	기사	일자	콜순번	기사 수입	경비 (30.4% 가정)	① 보수액	기사 부담 보험료 (0.7%)	사업주 부담 보험료	월별보험료 총액
A1	R1	1	1	3,000	912	2,088	(경비, 보수의 단수조정) 원단위 미만 절사		
			2	2,500	760	1,740			
			3	2,150	653.6	1,497	(일보험료의 단수조정) 원단위 절사 또는 절상		
			소계	7,650	2,325.6 = 2,325	5,325	37.275 = 30원	30원	
		2	:	:	:	:	(경비, 보수의 단수조정) 원단위 미만 절사		
		:	:	:	:	:			
		31	:	:	:	:	(월보험료의 단수조정) 원단위 절사		
		월계		3,139,460	954,395.84 = 954,395	① 2,185,065	15,295.455 = 15,290원	15,290원	30,580원

-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1월의 노무제공일자와 "①"에 해당하는 월보수액을 이용개시 사업주별, 노무제공자별 레이아웃에 따라 공단에 신고
- (원천공제 및 보험료 납부) <1단계> 일단위 원천공제. 즉, 1일자 A1(사업주) 부담분 30원, R1(기사) 부담분 30원을 원천공제 등  
<2단계> 1월 A1(사업주) 부담분 15,290원, R1(기사) 부담분 15,290원을 원천공제하고, 공단이 부과하는 30,580원 납부
- 하한 기준보수는 적용하지 않음



## <4\_1> 플랫폼사 보험사무 지원

(목적) 플랫폼사에게 보험사무 의무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에 플랫폼사의 보험사무 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제도 조기 안착 및 성실신고 독려

### 1. 피보험자관리 지원금

- ❖ (지급 조건) 플랫폼사가 법정기한 내에 피보험자  
자격 신고, 월보수액 통보서 등을 제출한 경우  
(일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 월보수액통보서 등  
(단기)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 ❖ (지급 금액) 피보험자격 신고 건수 X 1,000원  
- 분기별 지급 신청에 따라 분기별 지급 예정
- ❖ 향후 세부 기준 마련하여 시행 예정

### 2. 징수사무대행 지원금

- ❖ (지급 조건) 플랫폼사가 부과된 월별보험료를  
각각 법정기한 내 납부한 경우
- ❖ (지급 금액)  
동일 분기 피보험자관리 지원금 지급 건수 X 2,000원  
- 분기별 지급 신청에 따라 분기별 지급 예정
- ❖ 향후 세부 기준 마련하여 시행 예정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고용보험 적용·부과>



###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

#### <플랫폼사 정보>

- 플랫폼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 <사업주 정보>

- 사업장명,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사업주명, **사업주 주민등록번호**
- 플랫폼 이용 개시일 등

#### <노무제공자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 취득·상실일(노무제공일), 월보수액
- (외국인) 체류자격, 국적 등

3년간 정보 자료 보관

###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 사업주 정보
  - 퀵서비스 업체
  - 음식배달 업체
  - 대리운전 업체
- 노무제공자 정보
  - 퀵서비스 기사
  - 음식배달 기사
  - 대리운전 기사

### 근로복지공단

- 플랫폼 사업장 관리
  - 플랫폼사 등록번호 부여 등
  - 월별보험료 산정 부과
  - 플랫폼사 사무지원금 지급

- 노무제공 사업장 관리
  - 사업주별 사업개시번호 부여 등

- 노무제공자피보험자격관리

- 고용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납부관련 자동이체 관리
- 월별보험료 고지서 송부
- 고용보험료 납부처리
- 고용보험료 체납관리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실업급여사업 관리
  - 구직급여 신청처리 등
- 출산전후급여 관리
  - 출산전후급여 신청처리 등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적용 특례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적용확대  
(2022.1.1. 시행)

## <4\_2> 플랫폼사의 고용보험 신고·납부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



신고, 납부 등  
법정 기한 준수

- 피보험자격 관리를 위한 법정 신고기한 및 납부 기한 준수

요청에 따른  
자료제공 등

- 고용노동부, 공단이 고용보험 보험관계 확인, 보험사무 지원금 신청에 따른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 제공 등 준수
- 이용 사업주 및 노무제공자가 원천공제 내역을 확인 요청하는 경우에 대해 관련 내역을 제공(사업주별 노무제공자별 원천공제대장 또는 전산 자료 보관)
- 고용보험 적용 부과를 위한 이용사업주와 노무제공자 정보, 호출건에 대한 정보 등을 3년간 보관

고용보험료  
납부 전용 계좌  
관리 필요

-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금액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고용보험료 납부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 필요



## Ⅱ.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노무제공자, 사업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적용 특례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적용확대  
(2022.1.1. 시행)

## <5>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보수액 23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22년 고시 금액 230만원)**

### 지원 수준

-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신규, 기적용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지원제외 대상

- 전년도 재산 6억원 이상, 종합소득 3,80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자

### 지원 절차

- 플랫폼을 이용하는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각각** 공단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제출**(사업주별, 노무제공자별 별도 신청)
  - 기존에 지원신청을 한 사업장도 별도 지원신청을 추가로 하여야 함

## <5>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지원 방법

- 신청일 이후 플랫폼에서 부과된 **당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납부한 개인별 보험료의 80%를 다음달 사업주별 및 노무제공자별 지원
  - ① 법정 신고기간내에 취득 신고 및 월보수액 통보서를 제출하거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
  - ② 부과된 당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1월 보험료 3.10일 납부)
  - ③ 사업주의 소속 노무제공자가 조건을 만족할 경우 사업주가 해당 노무제공자에 대해 납부한 보험료 80%
  - ④ 조건을 만족하는 노무제공자의 경우 모든 플랫폼을 이용한 소득이 조건을 만족할 경우 납부한 보험료의 80% 지원

### 지원 기간

- **최장 36개월까지 지원**(신규와 기존 구분없이 지원)

### 유의 사항

- 노무제공자로서 둘 이상 사업에 동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사업의 보수액을 합한 금액이 230만원 미만인 경우에 지원
- 근로자, 노무제공자, 예술인 등 각각 이중취득 된 경우에는 각각의 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경우 모두 지원  
(예) 근로자 100만원(A), 노무제공자 100만원(B), 예술인 100만원(C)
  - \* 각각의 보수가 230만원 미만으로 A,B,C 모두 지원대상
  - \* 각각의 사업장에 36개월간 지원이 가능함



## Ⅲ.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노무제공자)

## <6>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 6\_1. 구직급여

### 6\_2. 출산전후급여



#### 수급 요건

- **실업 상태일 것(피보험자격상실)** :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기여요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것**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로 피보험 자격을 유지  
(이전에 타사업장에 취득되어 있었던 다수 취득자가 대상)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사유는 인정)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인정**

## <6>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 6\_1. 구직급여

### 6\_2. 출산전후급여



#### 지급 수준

- **(기초일액)** 구직급여일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일액
  - 마지막 이직일 전 1년 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
  - 다수 취득자는 해당 기간 동안 합산하여 산정함
- **(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의 60%,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66,000원)**

#### 피보험단위기간

-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의 합계로 작성**
  - (사례1) 일반 노무제공자(R) '22.3.11.취득, '22.12.20. 이직한 경우  
 → 4월 ~ 11월(8개월) +  $[(21+20)/30]$ (1.37개월) = 9.37개월
  - (사례2) 단기노무제공자는 역월 기준으로 노무제공일이 월 11일 이상이면 1개월, 11일 미만이면 해당 월의 노무제공일을 모두 합산한 후 22일로 나누어 산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노무제공일수	12	15	13	10	10	8
피보험 기간	1월	1월	1월	$(10+10+8)/22=1.3$ 개월		
	3개월			1.3개월		

## <6>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 6\_1. 구직급여

### 6\_2. 출산전후급여



#### 다수 고용형태 종사자

#### 다수 고용형태 종사자 피보험 단위기간

-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동시에 피보험자로 가입된 경우  
- 근로자로 구직급여시-근로자 피보험기간, 예술인으로 구직급여시-예술인 피보험기간,  
노무제공자로 구직급여시-노무제공자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
- 노무제공자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근로자, 노무제공자, 예술인 중 둘 이상의 피보험  
자격 취득이 된 경우

$$1 - [ \text{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단위)} / 12\text{개월} ] \leq [ \text{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일 단위)} / 180\text{일} ] + [ \text{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단위)} / 9\text{개월} ]$$

(사례1) 이직 전 24개월간 노무제공자로 9개월, 근로자로 90일(유급일) 종사한 경우

$$\rightarrow 0.25(=1-9\div 12) \leq 0.5(=90\div 180)\text{이므로 기여요건 충족}$$

(사례2) 이직 전 24개월간 노무제공자로 4개월, 근로자로 120일(유급일), 예술인으로 4개월 종사한 경우

$$\rightarrow 0.67(=1-4\div 12) \leq 0.67(120\div 180)+0.44(=4\div 9)\text{이므로 기여요건 충족}$$

## <6>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 6\_1. 구직급여

### 6\_2. 출산전후급여



#### 소정급여일수

#### ▪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 지급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구직급여 감액 기준

- 노무제공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노무제공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을 중지하거나 감액
- 지급 중지(전액 감액) : 당연가입 대상인 경우, 자영업 활동을 한 경우
- 감액 기준 : 지급중지 외의 경우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뺀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감액

## <6>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 6\_1. 구직급여

### 6\_2. 출산전후급여



#### 지급 요건

- 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 출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을 인정하되, 소득활동 허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

#### 지급 수준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80만원)

#### 지급 기간

- 출산 전과 출산 후를 더하여 90일(다태아 12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



## IV. 주요 Q & A





## <Q&A> 플랫폼사의 일반노무제공자와 단기노무제공자 관리 방법

Q. 플랫폼사에서 일반 노무제공자와 단기노무제공자를 효율적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 <1> 일반 노무제공자

(정의) 노무제공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사업주(퀵, 배달대행, 대리 업체)가 기사를 모집하여 계약하고 사업주가 이용하는 플랫폼(프로그램)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계약 종료일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무기 계약으로 판단)

### <2> 단기 노무제공자

(정의) 노무제공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① 사업주(퀵, 배달대행, 대리 업체)와 노무제공자간 계약기간이 명시적으로 1개월 미만인 사람
- ② 배송/대리 호출건을 발생시킨 발주사(퀵, 배달대행, 대리 업체)가 플랫폼을 통해 다른 사업주와 계약한 노무제공자에게 의뢰하는 경우 해당 배송/대리 호출(공유콜)을 수행하는 사람 (사업주와의 계약 없이 노무제공자가 앱상 호출건을 수락 → 호출건별 계약체결로 보아 단기노무제공자로 적용)

### <3> 일반/단기 노무제공자 DB 관리 방식

- 플랫폼사 자체 프로그램 내 별도 관리 필요

(예시)

- (플랫폼사) 일반 노무제공자 “해당” 구분란 신설
- 사업주(퀵, 배달대행, 대리 업체)가 직접 모집하여 계약한 기사에 대해 프로그램상 일반 노무제공자 “해당” 체크
- (플랫폼사) 구분자에 따라

#### <1> 일반노무제공자는 취득 신고 후 매월 월보수액 통보

- ① 월보수액 < 80만원인 경우 상실 신고 (원천공제 하지 않음)
- ② 80만원 ≤ 월보수액 < 133만원인 경우 133만원(하한기준보수)으로 기사부담 보험료(9,310원), 사업주부담 보험료(9,310원) 각각 원천 공제
- ③ 월보수액 ≥ 133만원인 경우 실보수로 기사와 사업주 부담 보험료 산정하여 각각 원천공제

#### <2> 단기노무제공자는 매월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 각 호출건에 대해 일별 보수와 보험료 산정 후 원천 공제 이후, 월별 보수와 보험료 산정 후 원천공제액 정산



## <Q&A> 이용사업주 개시신고 방법 및 이용사업 개시신고 대상 판단

Q. 플랫폼 이용사업주 (퀵서비스·배달대행·대리운전 업체) 중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신고 방법은?

A) 소득세법상 국내에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플랫폼 이용사업  
주도 포함)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임.

- 만일, 플랫폼이용사업주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사업 개시신고서 상 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주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시 접수되지 않음

- 아울러 플랫폼사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이용사업 개시  
사업장은 사업주와 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료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고,

- 사업주에게 사업자등록을 필히 하도록 안내 필요

Q. 플랫폼사가 이용사업주와 직접 플랫폼 이용계약을 체결  
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플랫폼사가 총판과 계약 후,  
총판이 지점 또는 팀장과 다시 계약하여 플랫폼을 이용  
하는 경우에도 이용사업 개시신고 대상인지?

A) 플랫폼사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간 플랫폼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용사업 개시신고 대상임

- 노무제공자가 플랫폼을 이용하여 노무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주(퀵서비스·배달대행·대리운전 업체)를 이용사업 개시신고  
대상으로 판단

- 향후 플랫폼사는 플랫폼 이용계약을 모두 체결하도록 안내



## <Q&A> 피보험자 판단, 사업주 부담분 보험료 판단

Q. 대리운전기사 겸 지점장의 경우 사업주로 판단하여야 할지, 아니면 피보험자로 판단해야 하는지?

A) 대리운전기사겸 지점장의 경우

(현황)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전화번호만 생성시켜 콜을 받아 직접 노무를 제공하거나, 타 대리운전업체에서 발주한 콜을 수행, 둘 이상의 플랫폼을 이용하기도 함

- 대리운전업체 사업주로서 고객으로부터 자신의 전화번호로 콜을 받아 대리운전을 수행하면 해당 콜에 대해서는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음
- 그러나 타 대리운전업체의 발주콜을 수락하여 대리운전을 수행하는 경우는 단기노무제공자로 판단하고, 플랫폼사가 발주사를 사업주로 보아 피보험자격 신고 및 보험료 원천공제·납부하여야 함

Q. 한건의 노무제공(호출건)에 대해 발주사와 수주사 간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사업주는 누구인지?

(발주사) 음식점과 배달업무 수행계약(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배달대행업체(A).

(수주사) 발주사(A) 소속 배달기사가 콜을 수행할 수 없어 콜공유를 통해 타배달대행업체(B) 소속 배달기사(b)가 콜을 수행하는 경우, 타 배달대행업체(B)를 말함

A) 발주사를 사업주로 판단하고, 플랫폼사는 공유콜에 대한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발주사로부터 원천공제해야 함

- 발주사가 배달업무 수행계약 체결에 따른 호출 발생하고, 문제콜에 대한 책임(배상)을 부담하므로 호출건별 계약상대자인 사업주로 판단하고, 수입 배분비율(발주사 전액 55, 73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료 전액을 발주사가 부담
- 다만, 발주사, 수주사간 내부적 수입배분은 시장내에서 결정



<Q&A> 둘 이상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당연 적용 판단

Q.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플랫폼사에 각각 등록하고 노무제공하는 경우 당연 적용 판단 기준은?

- A) 각 플랫폼사별 사업주와의 계약을 별도로 보아 각각의 플랫폼에서의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만 적용  
 ♣ 단기노무제공자는 소득에 관계 없이 모두 적용

(예시) 아래의 표에서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플랫폼사를 이용하는 경우로 가정

플랫폼사	이용사업주	노무제공자	1월 월보수액	비고
P1	A	r1(A등록)	50만원	
	B	r2(B등록)	100만원	
	⋮	⋮		
P2	A	r1	40만원	
	E	r2	30만원	
	⋮	⋮		

<각 플랫폼사별, 사업주별 노무제공자 적용 여부 판단>

- (1) P1-A-r1 간 r1은  
 - 일반 노무제공자이나, 1월 보수액 50만원이므로 적용 제외
- (2) P2-A-r1 간 r1은  
 - 일반 노무제공자이나, 1월 보수액 40만원이므로 적용 제외
- (3) P1-B-r2 간 r2는  
 - 일반 노무제공자이고, 1월 보수액 100만원이므로 당연 적용 (취득, 월보수액 신고 대상, 하한 기준보수 133만원으로 부과)
- (4) P2-E-r2 간 r2는  
 - 단기노무제공자이고, 1월 보수액 30만원으로 당연 적용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대상)



## <Q&A> '일' 산정 기준, 노무제공자 정보 외부 제공 관련

### Q. 피보험자격 신고를 위한 '일(日)' 산정 기준은?

(현황) 심야·새벽 시간대 호출발생으로 퀵(일반, 음식배달), 대리운전 플랫폼의 경우 '일(日)' 산정 기준이 플랫폼社 정산시간대에 따라 상이  
\* 당일 5:00부터 익일 5:00 전까지, 당일 7:00부터 익일 7:00 전까지 등

#### A) '일(日)' 기준은 00:00~24:00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

-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노무제공 일자를 신고하도록 하고, 1개월 중 11일 이상 노무제공하여야 피보험 단위기간을 1개월로 산정하므로 노무제공일에 대한 '일(日)' 산정 공통 기준을 마련함
- (일반노무제공자) 최종 노무제공일 판단 시 00:00~24:00를 기준으로 산정(최대 1일 증가 예상)
- (단기 노무제공자) 월별 노무제공일이 연속되는 경우 월말 1일 증가가 예상됨. 다만 플랫폼사내 프로그램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재 운영중인 일산정 기준으로 노무제공일(보수 포함)을 산출하되, 월별 최대 1일 증가 등 고려

### Q. 노무제공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보수액 신고로 인해 검업수행, 소득노출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고용보험 신고로 인해 고용노동부, 공단이 보유한 기사의 정보가 외부로 제공되는지 여부?

- #### A)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 취득된 노무제공자의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소득, 피보험기간, 취업 사업장 정보 등)는 원칙적으로 타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기관의 자료제공 요청 등에 따르지 않고는 외부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 현재까지 노무제공자에 대하여는 국세청 등 외부기관에 제공되지 않음
  - 다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관리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시스템)에 피보험 자격 및 소득 정보는 제공됨



## <Q&A> 보험료 산정을 위한 단수처리, 경비율 적용 방식

### Q.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금액 산정 시 단수처리 방법은?

A) 보험료징수법 상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 신고 기준에 따라  
매월 신고되는 월보수액에 따라 보험료 원천공제액을 노무제  
공자, 사업주별로 각각 산정하여야 함.

\* 일반노무제공자는 월보수액 통보서 상 신고되는 매월 월보수액  
단기노무제공자는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상 매월 월보수액

- 보험료 산정 시 원단위 절사에 따른 차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산정하도록 권고(교안 시트 34, 35, 36 참조)

(일반노무제공자) 각 호출건별 보수액을 월단위로 합산한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을 권고

(단기노무제공자) <1단계> 각 호출건별 보수액을 일단위로 합산한  
일보수액 기준 보험료 산정 및 정산  
<2단계> 이후 월단위로 합산한 월보수액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및 정산

### Q. 보수 산정을 위한 경비율 적용 방식은?

- 콜보수별 경비율 적용할 지, 월보수별 경비율 적용할 지

A) 노무제공자 관리방식에 따라

- (일반노무제공자) 월보수액에 대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보수  
산정

- (단기노무제공자) 호출건별 노무제공 실태와 원천공제 차액  
최소화를 고려하여 일별, 월별 보수 산정  
및 보험료 산정 방식 필요

- 교안 시트 34, 35, 36 참조



## <Q&A> 특이 호출건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부과 기준

Q. 플랫폼내 제휴콜(위탁콜), 가짜콜(가라콜), 문제콜(취소콜), 테스트콜 등 특이 호출건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부과 기준은?

### <1> 제휴콜(위탁콜)

(사례) 플랫폼사간 계약에 따라 A플랫폼에서 발생한 콜을 B플랫폼으로 위탁 가능. 이 경우 B플랫폼을 이용하는 기사가 콜수행

### <2> 가짜콜(가라콜) 실적을 발생시키기 위해 가짜콜을 발생.

일부 플랫폼사의 콜량에 따른 프로그램 사용료를 면제 등 방식운영으로 가짜콜 발생 사례가 있음

### <3> 문제콜(취소콜) 콜 취소, 대급지급 문제 발생하는 콜 등

(사례1) 당초 고객의 콜이 취소되는 경우

(사례2) 고객의 콜 비용이 현금에서 카드, 다시 카드에서 현금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신고된 카드로 결제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콜이 취소되는 경우

(사례3) 당초 만원짜리 콜이 최종 4만원짜리 콜로 보이는 경우 (플랫폼사는 전산상 자료만 확인되므로 실제 입금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 불가)

### <4> 테스트콜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 임의적으로 발생시키는 콜

(사례) 기사가 앱을 설치하면서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상의 콜을 올리고 수행완료 입력

⇒ 프로그램 상 테스트 판단 시 콜을 취소하는 기능도 있으며, 금액 입력에 제한이 없음(0원 또는 일정 금액 입력 후 계좌에 실제 송금 등 가능)

⇒ 일부 기사는 1일 10콜 이상일 경우 소득 노출을 꺼려 테스트 기사로 체크하여 콜을 발생시키고, 이후 취소하기도 함



## <Q&A> 특이 호출건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부과 기준

A. 특이 호출건별로 실태를 파악하여 적용·부과 기준을 마련하되, 사안별로 판단할 예정임. 다음은 사안별 판단기준임

### <1> 제휴콜(위탁콜)에 대한 적용·부과 기준

- (노무제공자) 고객의 콜을 수행한 기사
  - \* 사례의 B플랫폼 소속 콜건 노무제공을 수행한 대리운전기사를 말함
- (사업주) 고객의 콜을 접수하고, 발주한 A 플랫폼사 소속 대리운전업체
  - \* 사례의 A플랫폼사 소속 대리운전업체 사업주(발주사)
- (플랫폼 적용 특례에 따른 피보험자 신고, 보험료 원천징수·납부 의무자) 최종 노무제공이 완료된 플랫폼사
  - \* 사례의 B플랫폼사가 피보험자 신고 및 보험료 원천징수·납부

### <2> 가짜콜(가라콜), 문제콜(취소콜), 테스트콜에 대한 적용·부과 기준

- 실제 노무제공 사실 여부에 따라 적용 대상으로 판단

즉, 실제 노무제공 사실이 없는 가짜콜(가라콜), 문제콜(취소콜), 테스트콜은 적용 대상이 아님.

다만, 플랫폼사는 실제 노무제공 하였음에도 프로그램상 임의로 콜을 취소하거나 테스트콜 등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프로그램 개선 등 조치 필요(실제 테스트콜의 경우에도 금액의 송금이 되지 않도록 개선 등 조치 필요)



## <Q&A> 콜수수료 외 지급되는 기사의 수입에 대한 보수 판단

Q. 콜무, 마일리지, 프로모션, 인센티브 등 수입의  
보험료 산정대상 보수 판단 기준은?

### <1> 콜무

(사례) 콜수행 시 기사가 모든 수익을 지급받고, 사업주는 소득이 없는 경우

### <2> 마일리지

(사례) 사업주↔기사 간 마일리지 지급  
사업주의 전화번호로 동일 고객이 대리운전 5회 이용 시  
1회 무료 이용에 따라 사업주가 추가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3> 인센티브

(사례) 사업주↔기사 간 인센티브 지급(이벤트성 지급)  
프로모션, 이벤트 진행을 통한 보너스 포인트 지급.  
기사App 내 포인트 계정으로 지급하기도 하며, 사업소득  
으로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있음

\* (픽크타임 출근이벤트) 4주간 픽크타임 출근기사 중 랜덤 추첨  
하여 보너스 포인트 지급 등

### <4> 프로모션

(사례) 플랫폼사↔기사 간 인센티브 지급  
기사 확보, 영업 확장 목적으로 플랫폼사가 이벤트 실시



## <Q&A> 콜수수료 외 지급되는 기사의 수입에 대한 보수 판단

### A. (원칙) 사업주와 고객간 약정한 금액(서비스 이용 대가)에서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간 약정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소득으로 산정한 금액을 고용보험료 산정 대상 보수로 봄

- 사업주와 노무제공자 간 약정에 따른 수입 배분에 있어 노무제공 시 최소한 자신의 노무제공 대가로 확정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 산정 대상 보수로 산정
- 그 밖의 특이 지급건에 대해서는 위의 원칙에 따라 지급 사안별로 판단 예정

#### <1> 콜무, 마일리지 콜 → 보수로 판단

##### - (콜무) 노무제공에 따른 대가로 판단

\* 당초 사업주와 고객간 약정된 대리운전비용 중 기사의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수로 판단

##### - (마일리지) 노무제공에 따른 대가로 판단

\* 마일리지는 사업주가 고객에게 제공한 금전적 가치로서 고객이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이는 고객을 대신하여 사업주가 대가를 부담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해당 마일리지 중 노무제공자 소득 배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용보험료 산정 대상 보수에 해당함

#### <2> 인센티브, 프로모션 등에 대한 보수 판단

- (인센티브, 프로모션 등) 당초 사업주-고객 간 약정 금액(서비스 이용 대가), 사업주-노무제공자 간 약정 금액(콜 수수료 등)과 별도로 일시적 기준에 따라 이벤트성으로 소득이 발생되므로 보수에서 제외.

특히 플랫폼사의 운영 또는 영업 홍보를 목적으로 지점 소속 기사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등은 보수에 해당하지 않음



## <Q&A> 공단의 플랫폼사 정보연계 구축 일정, 소득세법 관련 문의

Q. 2022년 공단의 플랫폼사 신고 접수, 처리 시스템 구축 일정 및 대량의 정보 신고를 원활히 하기 위한 Open API 방식 도입 시기는 언제인지?

### A) 시스템 구축일정

#### <1> 플랫폼사 보유정보 연계 방식 구축 일정

- 엑셀파일 등록 방식(~'22.1.20.) → OPEN API 연계 방식(~'22.6.)
- 혼합 방식('22.7.~)

#### <2> 2022년 플랫폼사 신고 접수 및 처리 시스템 구축 일정

- 접수·가입처리(~'22.1.20.) → 접수·자격처리(~'22.2.1.)
- 부과처리(~'22.2.15.~3.15.) → 고용보험료 지원(~'22.4.15.)
- 플랫폼사 보험사무 지원(~'22.5.31.)

Q.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개정으로 용역제공사업장 제공자에게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신고 의무자 등 자세한 안내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A)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개정·시행과 관련하여 국세청의 행정해석 자료는 2021.12.8.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고

\* 제목 "12월은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의 소득자료 매월 제출 첫달!" (2021.12.08. 수)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

- 안내된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으로 문의하여 플랫폼사 별 사안에 맞게 정확하게 안내 받아 신고



## V. 고용보험 업무 수행기관 안내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적용 특례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적용확대  
(2022.1.1. 시행)

## <7> 고용보험 업무 수행기관

7\_1. 고용노동부(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7\_2.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 고용보험업무 수행기관

기관	주요 업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사업 관련 각종 지원업무</li><li>• 실업급여 관련 업무는 수급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담당</li><li>•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li></ul>
근로복지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고용보험 가입, 보험료 산정·부과,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등 담당</li><li>• 피보험자격 관리</li></ul>
국민건강보험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보험료 고지 및 수납, 체납관리</li></ul>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적용 특례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적용 확대  
 (2022.1.1. 시행)

## <7> 고용보험 업무 수행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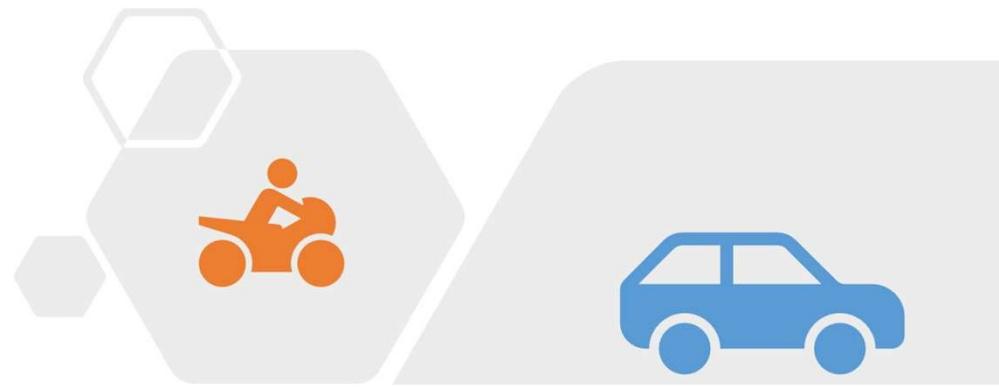
7\_1. 고용노동부(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7\_2.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센터

서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주소	서울시 종로구 을지로2길 25(수송동, 연합뉴스빌딩) 11층			
	대표전화	(특고)02-6946-0500 (예술인)02-2097-9250	팩스번호	특고가입1부	0502-223-3102
				특고가입2부	0502-223-1203
				특고가입3부	0502-223-1204
예술인가입부				0502-223-3203	
관할구역	서울지역본부 및 강원지역본부 관할 지역 - 서울특별시, 강원도, - 경기도 외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남양주시, 구리시, 경기도 기량군				
부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주소	부산 동구 중앙대로 276(초량동, 아모레퍼시픽) 10층			
	대표전화	051-790-0300	팩스번호	특고가입1부	0502-661-1102
				특고가입2부	0502-661-1103
	관할구역	부산지역본부 및 대구지역본부 관할 지역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주소	인천시 부평구 길주로 635(삼산동, 엘림타워) 501호			
	대표전화	032-712-0500	팩스번호	특고가입1부	0502-451-1102
				특고가입2부	0502-451-1103
	관할구역	경인지역본부 관할 지역 - 인천광역시, 경기도(경기도 외정부시·동두천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남양주시·구리시 제외)			
대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137(둔산동, KT&G) 7층			
	대표전화	042-718-0600	팩스번호	특고가입1부	0502-870-1102
				특고가입2부	0502-870-1103
	관할구역	광주지역본부 및 대전지역본부 관할 지역 -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감사합니다